

② 개정조문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2(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)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의 부동산등”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<u>시가표준액</u> 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.	제14조의2(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) ----- ----- ----- -- <u>시가표준액(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,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)</u> --- -----.